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 황명선·송재봉·염태영

김남근 · 김준형 · 신영대

송옥주 · 모경종 · 이해식

윤준병 • 안규백 • 정일영

박희승 • 이재관 의원

(14인)

제안이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열악함.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 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 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 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 득·재산, 신용·보험·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한 소득·재산, 신용·보험·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요청,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의 관리를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신설).
-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 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를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 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를 "제21조의6 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로. "신용정보·보험정보를"을 "양육 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항"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금융정보등의 동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

용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가사소송법」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가사소송법」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14일"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을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 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수있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 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 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2.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
- 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⑥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8(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 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선지급 대상자의 선지급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

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 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채무자에게 알려야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 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신청 인등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신청인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 제3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 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21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및 회수금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 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
-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7. 출입국 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 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

항

-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관한 사항
- 7. 제21조의8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사항
- 8.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9.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1조의8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사항

11.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 및 제21조의8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 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

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 제6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u>				
	지급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					
비 새누사의 누소 등의 사료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u><신</u> 설>

② (생략)

- 1.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전산정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삭 제>
 -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 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 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 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 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 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삭 제>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

<삭 제>

<삭 제>

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서	1163	돈(양퓩	- H	재 ·	누사	의	개	산	등
	에	관한	조	사)	1	(현	행.	과	같
	음)								
	2								
				<u>:</u>	제21	조의	식 <u>6</u>	케	叫
	라	양육비	<u> 기가</u>	선	지급	-된	경	우-	
			•						
	(3)	~ (5)	(혀	행 3	라 같	날음))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신 설>

제17조<u>(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u> 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 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u>정보</u>
<u>②</u>
<u>금융정보등을</u>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u>④ 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금 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
<u>된 경우</u>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u>.</u>
<u>③</u> <u>제2항</u>
<u>④</u> 제3항
⑤ 제2항 및 제3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 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 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 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 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 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 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 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 ④ (생 략)

「 <u>가사소송법」제63조의3제4항</u>
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① (시설레리 7k O)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u>「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u>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u>「가사소송법」 제 64조제1항제1호에 따른</u> 이행명 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가사소
송법」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司 り > 入口
<u>'가사소송법」</u>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금명령 또는 간은 번 제6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 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 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 육비 채무자에게 <u>3개월</u>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②
<u>14일</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
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
비의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을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 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 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 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 (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 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 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 2.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 경 또는 상실된 경우
- 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u>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u> 다.

⑥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 생 ·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 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 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 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 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 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시설 등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 단체 • 법인 및 시설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8(선지급 신청인등의 금 용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 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 청인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 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 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선지급 대상자의 선지급 사유의 변경 ·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 제3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 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 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 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 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 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양 육비 선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 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려 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 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 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 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 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신청인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 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u> 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u>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신 설>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 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제21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및 회수 금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 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 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 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 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과세표준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 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 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 급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 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 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 저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을 위한 조사 · 질문 등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8에 따른 선지급 신
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
한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신 설>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신 설>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9.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 <신 설> 지급을 위한 조사 · 질문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의8에 따른 선지급 <신 설> 신<u>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u> 공에 관한 사항 11.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 <신 설> 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및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제21조의8제6항-----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u>감치명</u> 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	행	과	같	음)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